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변경〉

■ 각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5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2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변경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3일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신설을 전제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현행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u>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u> 전속(專屬)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 ----- <u>해사법원에</u> ----- --. <u>이 경우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¹⁾, 현재 중앙해양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안전심판원(1개소)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4개소²⁾)이 설치·운영되고 있음.³⁾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裁決)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자 징계, 시정 명령,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을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사건의 경우에는 4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 먼저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조사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하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피청구인)를 지정하면서 심판 절차가 개시됨(제1심).
- 이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2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피고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재지⁴⁾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3심), 이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제4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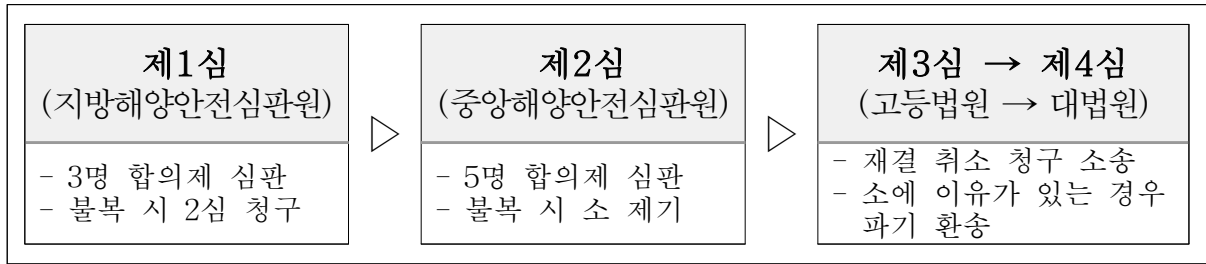
2) 부산, 인천, 목포, 동해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4) 세종특별자치시

[표] 현행 해양사고 심판 및 소송 절차



*자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개정안은 해양사고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 관할로 변경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⁵⁾

[표] 관련 법률안 현황

관련 법률안	제안자	의안번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22004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220045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22004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220045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2200455

5) 참고로, 지난 제20·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해사법원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개정안은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자 등에 대해 징계·권고·시정·개선조치 등을 다루는 해사소송의 특수한 목적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사소송의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법관에 의한 해결이 필요함.

□ 다만,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 특허소송과 같이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치할 만큼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 수요가 필요한데⁶⁾ 소송이 그만큼 많지 않고,

이에 비해 별도의 해사법원이라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임.

-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건 미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수요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첨부1 참고).

6) 2022년 기준 가사소송사건은 총 41,966건, 행정소송사건은 총 21,906건, 지식재산소송사건은 총 562건이 각각 접수되었음(제1심 접수 기준)

□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사법원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을 관할하는 경우, 법원의 전문성 증대와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및 소송 제기 현황****[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및 소송 제기 현황**

(단위: 건)

구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등법원	대법원
	접수	재결/기각		
2019	32	18	5	2
2020	24	13	3	1
2021	28	11	1	1
2022	26	20	5	1
2023	25	11	0	0
총계	135	73	14	5
연평균	27	14.6	2.8	1

* 자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